

## 현행 세법상 영업권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곽영민\*

### 〈요 약〉

본 연구는 현행 세법상 영업권 평가규정을 고찰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착수되었다. 이는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 비중이 최근 급속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무체재산권 특히 영업권 평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분쟁이 판례와 심판례 등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행 세법 규정에 따른 영업권 평가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납세사의 납세순응비용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관세관청의 정세비용 축소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제시되고 있는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은 매수영업권의 과대평가를 초래할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사업결합일 현재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결합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 현행 세법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매수영업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사업결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되는 식별가능한 무체재산권을 매수영업권에서 구분할 필요가 존재한다. 둘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부창출영업권의 평가규정을 살펴본 결과 현행 규정이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동 규정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가액이 산업효과(industry effect)에 따라 편의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특히 같은 규정을 준용하여 초과이익을 구하는 과정에서 10%의 정상이익률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정상이익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초과이익의 평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상이익률에 관한 현행 규정을 기존 일률적 10%에서 해당 동종 산업의 평균이익률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주제어: 영업권, 매수영업권, 내부창출영업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논문접수일: 2013년 02월 25일 수정일: 2013년 03월 06일 게재확정일: 2013년 03월 19일

\* 동국대학교 경영·관광대학 회계학과 조교수, ymkwak@dongguk.ac.kr.

## I. 서 론

무체재산권은 무형의 재산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무체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최근 경영환경이 정보화·지식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인간의 지적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통해 창출되는 무형의 재산권 즉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실무계와 학계에서는 무체재산권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져 왔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무체재산권 중 기업이나 사업자가 보유한 다른 자산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무체재산권인 영업권에 대한 가치평가 문제는 기업이나 사업자가 경쟁력제고를 위해 사업양수도, 합병, 분할 등의 구조조정 수단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 중요한 화두가 되는 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영미권 국가와 독일, 일본 등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미 영업권의 개념과 본질을 파악하고 영업권의 합리적 평가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경주하여 회계 및 세법상 관련규정을 정비해 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도 이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권평가방법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재무보고의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2011년부터 상장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준거회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권과 관련된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처리는 오랜 논의를 거쳐 국제적으로 정립된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정립되고 개선의 방향을 찾는 회계기준과는 달리 세법은 자국민의 조세평등과 원활할 세수확보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회계기준에서 제시되고 있는 현행 영업권 관련규정이 경제적 실질을 보다 잘 반영한다 하더라도 자국의 법인 및 사업자의 오랜 영업관행을 바탕으로 하여 제정된 현행 세법에서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국내 세법에서의 영업권 관련 규정은 국내외의 다양한 관련법규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괄적이어서 최근의 경제활동에 부합하도록 영업권에 포함되어 평가될 수 다양한 무형재산권의 범주를 세밀하게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업권의 가치평가에 관한 규정 또한 다소 모호하게 정립되어 있어 영업권과 관련한 징세 상황에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조세분쟁의 발생할 가능성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회계상 무형고정자산의 범주에 속하는 영업권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관련규정들을 고찰함을 통해 현행 국내 세법 특히, 법인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에 존재하는 무형자산 평가규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는 나아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권 평가방법에 대한 고찰은 향후 영업권을 비롯한 무체재산권과 관련한 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무체재산권의 거래빈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현행 세법상의 영업권 평가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준용비용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관세관청의 징세비용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영업권에 대한 이론적 평가모형을 논의한 후 국외의 영업권 평가와 관련한 세법 규정들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영업권에 대한 현행 국내 과세체계를 살펴본 후 현행 규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II. 무체재산권의 이론적 평가모형에 대한 개관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의 경영환경이 정보화·지식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인

적자원, 원천기술,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이 기업의 중요한 가치동인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형자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는 것이 중요한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형자산의 가치를 측정,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걸쳐 학계와 실무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크게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 평가규정에 대한 논의와 개별적으로 식별불가능한 무형자산인 영업권 평가방안에 대한 논의로 양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개별무형자산의 평가를 위해 고안된 3가지 이론적 모형을 요약하여 제시한 다음 본 연구의 주 관심대상 무체재산권인 영업권의 합리적 평가를 위한 이론적 접근법에 대해 보다 상세히 기술한다.

### 1. 개별 무형자산의 평가모형

기업이 보유한 개별 무형자산들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① 원가접근법(cost approach), ② 소득접근법(income approach), ③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의 3가지 접근법이 포함된다. 먼저, 원가접근법은 대상자산의 가치는 투입된 원가와 일치한다는 사고에서 출발하는 무형자산 평가기법으로 특정 시점의 무형자산의 가치는 무형자산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제반 비용에서 취득 후 평가시점까지의 경과기

간 동안의 가치 하락분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음으로 소득접근법은 예상되는 수익이 클수록 대상자산의 가치도 동조 증가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평가기법으로 대상자산의 가치는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획득 가능한 미래 순(net)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측정된다. 마지막으로 시장접근법은 대상자산에 대한 시장에서의 판단을 종합하여 계산한 미래효익의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기법이다. 단, 시장접근법을 통한 대상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대상물건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여야 하며 비교 가능한 자산이 거래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평가대상 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가 풍부히 존재하는 시장상황의 경우에는 상술한 세 가지의 개별 무형자산 평가기법 중 시장접근법을 통한 가치평가가 가장 합리적인 평가기법이 될 수 있다.

## 2. 영업권 평가모형

영업권을 측정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 방법으로는 잔여이익개념과 역동적 공개조직 가치개념 그리고 초과이익개념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잔여이익 및 역동적 공개조직 가치개념은 K-IFRS, 법인세법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에서 매수영업권의 평가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이론적 접근방법이며 초과이익접근법은 현행 상증세법 상

내부창출영업권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준용하고 있는 이론적 체계이다. 따라서 현행 세법상 영업권 평가규정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이론적 개념의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세법상 영업권 평가 규정에 근간을 이루는 3가지 이론적 개념체계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잔여이익개념에서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업가치에서 기업이 보유한 식별가능한 자산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를 차감한 잔여가치를 말한다. 이는 영업권을 구성하고 있는 우수한 경영진이나 인적자원 등이 미래에 창출할 잠재적 효익을 평가하기에는 측정의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관점에서 기인한다. 다음으로 역동적 공개조직 가치개념 하에서 영업권은 합병이나 사업결합에 있어 취득자가 피취득자가 보유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개별자산의 순 공정가치의 합이 아닌 기업조직과 환경과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구성된 전체적인 하나의 실체로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견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잔여개념과 역동적 공개조직 가치개념을 적용할 경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식별되지 않으며 평가금액의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반해, 합병이나 사업결합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거래를 통해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유상취득금액의 원가로 하여 영업권을 평가할 수 있다. 상술한 2가지 이론적 평가모형들은 본 절의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회계기준과 세법에 제시되고 있는 매수영업권 평가규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영업권을 개별적 자산으로 식별하여 평가하지 않는 잔여이익개념이나 역동적 공개조직 가치개념에서와는 달리 초과이익개념에서는 영업권을 별도로 인식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이론적 관점을 합리화하고 있다. 영업권을 초과이익으로 간주하는 이와 같은 견해는 1940년대부터 논의되어온 접근법으로 특정 기업이 초과수익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초과이익이 특허권 등의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그 기업은 총체적 무형가치인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현대의 초과이익접근법에서는 영업권을 회계 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미래 기대되는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본환원

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인식한다(이우택 2003). 다시 말해 기업이 상대적인 비교우위 능력을 보유함에 따라 초과이익<sup>1)</sup>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초과이익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대가로 지불할 근거가 되는 영업권이라는 것이다.

초과이익개념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의 계산과정을 필요로 한다. 먼저, 해당기업의 과거 수년간의 평균이익을 통해 미래기대이익을 추정한다. 이 때 과거 평균이익을 통해 미래기대이익을 추정하는 이유는 과거 평균이익이 미래기대이익의 추세변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수협상에서 협상력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자료로 이용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후 미래기대이익에서 기업의 정상이익을 차감하여 초과이익을 산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정상이익은 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정상이익률<sup>2)</sup>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초과이익을 적절한 할인율로 자본화하여 영업권의 금액을 결정한다. 이러한 계산과정을 요약하여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결과적으로 초과이익접근법

1) 기업의 초과이익은 기술상의 우위,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유능한 인적자원의 보유, 높은 고객충성도와 같이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요인들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2) 정상이익률(normal rate of return)은 현재의 조건하에서 동종사업에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필요한 이익률을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산업 내 기업의 평균이익률이 정상이익률의 적절한 대응치(proxy)로 활용되고 있다.

하에서 영업권은 해당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상이익률을 초과하여 획득할 수 있는 능력에 부여된 가치로 이해가능하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접근방법은 상증세법 상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준용되고 있다.

<표 1> 초과이익개념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과정

- 
- ① 미래기대이익 = 과거 수년간의 평균이익
  - ② 정상이익 = 순자산공정가치×정상이익률
  - ③ 초과이익 = 미래기대이익(①)-정상이익(②)
  - ④ 영업권 = 초과이익(③)×연금의 현재가치계수( $PVAF_{(n,r)}$ )
- 

### III. 영업권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최근의 경영환경에서 무형의 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업권의 개념 및 평가방안에 대한 논의가 학계 및 실무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영업권 평가에 대한 입법례를 논의해온 미국의 규정과 판례를 살펴본 후 독일과 일본에서의 영업권 평가와 관련한 세법규정을 기술한다.

먼저, 미국은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제197조에서 무형자산과 관련한 대부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법률에서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만 열거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무부규정(Treasury Regulation)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무부규정에 따르면, 영업권은 지속적인 고객 충성도의 기대에 따라 초래되는 거래 또는 사업상 가치로 정의되고 있으며, 그 기대는 상호나 명성 등에 근거한다고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관련 판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영업권 정의를 판시한 초기 판례 중 하나인 Metropolitan Bank 사건의 연방대법원 판결<sup>3)</sup>에서는 영업권을 지속적인 고객의 이용과 격려의 결과물로서 자본이나 자산 등을 초과하여 기업 등에 의해 소유되는 효익으로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업권의 개념은 너무 포괄적이며 모호하여 실무적으로 영업권을 인식하여 평가하는데 상당

---

3) 149 U.S. 436(1893)

한 계약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내국세입법 제1060조에 규정된 ‘잔여배분법(residual allocation method)’을 준용할 경우 영업권 개념의 모호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김현동, 2011). 이는 전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잔여개념 따른 영업권은 매수대가에서 식별가능한 순자산가치의 합을 차감한 나머지 값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영업권 개념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내국세입법에서는 잔여이익개념을 준용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업권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Philip 1997, 11-6). 참고로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제197조에서는 영업권과 구분되는 기타 유사 무형자산을 열거하고 있는데 정비된 인력(assembled workforce), 염가계약(favorable contracts)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독일의 경우는 세법이나 판례내용이 아니라 상법 조문을 파악함을 통해 영업권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독일 법인세법에서 과세표준의 산정에 관해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표시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다시 상법상 정규부기의 원칙에 위임하고 있어 상법 회계가 세무회계의 기준 법규가 되기 때문이다(박정우와 손상욱, 2001, p.61). 즉, 법인세와 소득세법에 구체

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독일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영업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연방조세법원도 무형자산을 무형의 대상으로 암묵적으로 동조할 뿐 대부분의 판결에서 구체적인 정의 없이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상법 제246조 1항에서 영업권(dervative firmwert)을 취득시점에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매수회사가 지급한 합병대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법조문에 기초할 때 독일도 미국과 유사하게 잔여이익개념에 근거하여 영업권을 평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조세법원의 일부 판례를 살펴보면,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경영학에 의해 발전된 직접 혹은 간접적 평가방법을 적절한 추정방법으로 인정한 사례도 관찰된다. 구체적으로 간접적 평가방법에서는 영업권을 기업측면에서의 수정된 수익가치인 총기업가치에서 개별경제재의 부분가치로부터 산정된 순자산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에 반해, 직접적 평가방법은 초과이익개념을 준용한 영업권 평가기법으로 투입자본의 정상이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을 자본화이자율로 환산하여 영업권의 평가금액을 산정한다. 이러

한 간접 및 직접적 영업권 평가방법을 산식으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이와 같이 독일은 영업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상법규정에서와 같이 잔여이익설을 통설로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나 판례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초과이익개념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내부창출 영업권이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과세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때 초과이익개념에 따라 영업권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견인되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의 영업권 관련 입법례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에서 비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대가가 승계 받은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때에 자산조정계정(資産調整計定)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산조정계정이 바로 영업권에 해당한다. 또한 영업권의 평가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한 초과이익개념, 잔여이익개념, 역동적 공개조직 가치 개념 등 다수의 학설이 논쟁을 펼치고 있으나 초과이익개념이 일본의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細川健, 2007, p.178; 김현동, 2011, p.85). 초과이익개념에 따른 일본 세법상 영업권 가액은 다음의 <표 3>과 같은 산식을 통해 계산된다. 이 때 초과이익은 과세시기가 속하는 해(year)로부터 과거 3년간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평균이익에 0.5의 배수를 곱한 금액에서 기업가보수액과 총자산가액에 기준연이율을 곱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함으로써 산출한다.

<표 2> 영업권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독일)

$$\text{간접적 평가방법: } GW = f \times \left( \frac{JG - UL}{i} - SW \right)$$

$$\text{직접적 평가방법: } GW = \frac{JG - (SW \times i + UL)}{i}$$

여기서, GW : 영업권가치  
 SW : 순자산가치  
 f : 오류와 위험에 대한 할인율 (예 50%)  
 JG : 평균적, 지속적(수년의) 연차이익  
 UL : 적절한 기업가 보수  
 i : 자본화 이자율<sup>4)</sup>

4) 자본화 이자율 i는 기본이자율(확정이자부 유가증권의 산업별이자 또는 지역별 수익률)과 기업특유의 위험할증 가산금(통상적으로 50~60%)을 합성하여 구해짐.



<표 3> 초과이익개념을 적용한 영업권 평가방법(일본)

$$\begin{aligned} \text{영업권의 가액} &= \text{초과이익금액} \\ &\times \text{영업권의 지속연수를 고려한 연금의 현재가치계수(PVAF}(n,r)) \end{aligned}$$

요컨대, 영업권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잔여이익 개념과 초과이익개념에 따라 영업권의 평가가액을 산출하고 있으나 국가별 영업환경의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영업권 평가 산식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매수영업권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잔여이익법에 기초한 평가방법을 원용하고 있으며 내부창출영업권에 대해서는 초과이익접근법에 따른 평가규정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기법을 통해 예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내 세법의 영업권 관련규정은 다소 포괄적이며 부분적으로 모호한 측면이 산재되어 있어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영업권과 관련한 조세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영업권과 관련한 조세불복 사례는 신문지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sup>5)</sup> 이하에서는 영업권 평가와 관련한 국내의 현행 세법상 규정내용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 IV. 현행 상증세법상 영업권 평가 규정과 문제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업권은 매수영업권과 내부창출영업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매수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결합과정에서 취득자가 획득한 피취득자의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예상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즉, 매수영업권은 합병, 영업양수도와 같은 사업결합의 과정에서만 인식되는 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매수영업권은 기업회계와 세법 모두에서 그 자산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현행 세법에서는 이를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매수영업권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취득이후 시점의 과세가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현행 세법상 매수영업권의 취득가액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평가는 기업회계에서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내부창출영업권은 정상

5) 이에 대한 일화적 증거로 퍼스텍을 들 수 있다. 조정밀분야 방위산업 및 얼굴인식 보안업체 퍼스텍은 2009년 5월 세무서로부터 26억원의 법인세 경정 조치를 받았다. 이 조치는 영업권 감가상각비 부인에 따른 것으로 회사측은 이에 불복, 조세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며 2010년 4월 22일 승소하여 경정금액을 환수하였다.

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기업 내부에서 창출된 무체재산권을 지칭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창출영업권은 전술한 매수영업권과는 달리 기업회계상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는 내부창출영업권의 경우 외부와의 직접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권의 측정이 매우 주관적이거나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내부창출영업권이 기업회계상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는 세법상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내부창출영업권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실무적으로 내부창출영업권을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상속이나 증여할 때 이에 대한 과세가액의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영업권의 평가는 그 형태에 관계없이 현행 세법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매수영업권과 내부창출영업권은 거래유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평가방법 또한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세법에서도 매수영업권과 내부창출영업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각각 다르게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매수영업권과 내부창출영업권을 별도의 소절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현행 세법의 평가규정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 1. 매수영업권

### 1.1 매수영업권에 대한 현행 세법의 평가규정

매수영업권에 대한 평가규정은 현행 상속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제시되고 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64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59조 1항에서는 매입 무체재산권을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한 무체재산권을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매입무체재산권의 일반적인 평가규정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평가대상이 되는 무체재산권의 범위 및 합병 등과 같은 사업결합에서 합병법인이 인식하는 합병매수차손 즉 매수영업권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문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무체재산권 및 합병매수차손의 관련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무체재산권을 무형 고정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제시된 영업권에 대한

평가규정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상의 관련규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에 제시된 법인세법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매입무체재산권의 범주 및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수영업권의 정의와 평가에 대해

서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업결합에서 합병법인이 인식 가능한 매수영업권은 법령 제24조 제1항에 열거되는 무형고정자산의 범주에서 배제하여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 영업권과 관련한 법인세법 규정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개발비 바.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사.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나.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다만, 아래 <표 5>에서 제시한 법인세법 제4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80조3의 제2항 및 제3항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표 5>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고 그 내용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차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법인세법에서 합병법인이 인식한 합병매수차손을 명시적으로 매

수영업권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초과지급대가가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경영프리미엄 등에 의해 초래되고 있을 경우 그 초과지급대가에 대해 자산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또한, 합병매수차손의 상각기간으로 제시되고

있는 '5년'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것으로 이러한 점을 기초할 때 합병법인이 인식한 사업성 있는 초과지급액 전액을 매수영업권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다.

<표 5> 매수영업권 평가와 관련한 법인세법 규정내용

법인세법 제44조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3
<p>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p> <p>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p> <p>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p>	<p>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턴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p> <p>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p> <p>③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0.6.8]</p>

요컨대 현행 법인세법은 사업결합과 합병의 경우를 망라하여 사업양수법인과 합병법인(이하 취득자)이 사업양수도일 혹은 합병등기일(이하 사업결합일) 현재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및 인수부채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가 사업성이 있을 경우 초과 지급 대가의 자산성을 인정하여 그 초과금액을 매수영업권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행 법인세법의 관련규정은 취득자가 사업결합일 현재 피취득자로부터 인수하는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여 유상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러한 초과금액에 사업결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식별되어질 수 있는 무체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고 초과금액 전액을 매수영업권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 1.2 매수영업권 평가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앞서 제시한 현행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양수도나 합병 시 취득자가 인식할 수 있는 무체재산권은 피취득자가 사업결합일 현재 ① 기보유하고

있는 무체재산권과 ② 초과지급액으로 측정된 매수영업권 2가지이다. 하지만 이를 준용하여 사업결합에 따른 매수영업권을 평가할 경우 매입영업권의 매입가액이 과대평가 되고 매입영업권 외의 매입무체재산권의 매입가액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와 같이 사업결합일 현재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지 않았던 항목이 사업결합을 통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피취득자가 내부에서 개발하고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브랜드명, 특허권, 고객정보 및 연구개발비 등은 피취득자의 사업결합일 현재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나 사업결합 과정에서는 이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sup>6)</sup>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이와 같이 사업결합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 가능한 잠재적인 자산·부채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고

6)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피취득자의 유리한 운용리스 계약도 이러한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취득자가 시장조건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임가)으로 제조설비를 운용리스하고 있을 경우 그 유리한 금액은 취득자가 그 리스계약을 매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전할 수 없더라도 매입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해야하는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무체재산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취득자가 기술특허권을 보유하고, 그 특허권을 국내시장 밖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하고, 그 대가로 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취할 경우 기술특허권과 관련 라이선스 약정은 서로 분리하여 실무적으로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각각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체재산권으로 볼 수 있다.

매수영업권에 해당 항목을 모두 포함시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수영업권의 취득가액이 적절히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현행 세법상 매수영업권에 대한 평가 문제는 <그림 1>에 제시된 예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자가 지급한 초과지급금액에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무시하고 초과지급액 전액을 매수영업권의 매입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 그림에서 ㉠와 ㉡ 영역의 합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영업권이 식별불가능하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영역에 만약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자산이 있다면 이를 영업권 외의 별도의 무체재산권으로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sup>7)</sup> 즉, 현행 세법상 ㉠+㉡에 의해 평가되는 매입영업권의 매입가액을 영업권 외의 식별가능한 무체재산권인 ㉠와 매입영업권 ㉡로 분리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사업결합일 현재 재무제표

에 나타난 순자산의 매입가액(시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피취득자가 기존에 인식하지 않았던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 존재할 경우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매수영업권의 매입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수영업권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크게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매수영업권 취득가액의 과대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한 매입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매입무체재산권 평가가액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A-B)이 1,000원, 이전대가(C)가 1,500원, 그리고 ㉠에 해당하는 상표권이 300원(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 따라 10년을 적용)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현행 규정을 준용하면 매수영업권의 매입가액은 500원으로 평가되며 만약 이러한 매입 무체재산권을 2년 후에 상속 혹은 증여한다고 할 경우 상속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매수영업권의 평가가액은 매입가액 500원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법인세법에 따른 영업권의 내용연수 5년을 적

7) 이를 보다 구체적화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영업권을 구성하고 있는 잠재적 무형자산은 성질이나 그 내용연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일괄적으로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것의 문제점
- ②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분쟁의 빈발과 정보화시대의 출현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는 전체 자산 중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포함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또한 무형자산과 관련한 정보를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더욱 중요시하고 있음.

용) 200원을 차감한 300원으로 산출된다. 하지만, 초과지급 금액 중 식별 불가능한 자산만을 영업권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매입무체재산권은 매수 영업권 200원과 상표권 300원으로 구성되며 이를 2년 후에 모두 상속 혹은 증여할 경우 매수영업권은 매입가

액 200원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 80원을 차감한 120원으로 상표권은 매입가액 300원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 60원을 차감한 240원으로 각각 평가되어 상속 혹은 증여하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총 평가금액은 360원이 된다.

㉠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사업결합일 현재 기 인식되어 있는 식별가능한 자산	㉡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부채
㉣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사업결합일 현재 인식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결합을 통해 취득자가 인식 가능한 브랜드명, 특허권, 연구개발비 등의 무형자산	㉢ 이전대가
㉤ 매입영업권	

<그림 1> 매수영업권 평가 사례

이상의 사례들은 모두 취득자가 사업결합일 현재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제시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전대가에 피취득자가 인식하지 않았던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초과지급액 전액을 매수영업권으로 평가할 경우 매수영업권의 취득원가가 과대평가되고 영업권 외의 무체재산권이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

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가액이 왜곡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검토할 때 매수영업권과 관련한 현행 세법규정은 상술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절히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내부창출영업권

### 2.1 내부창출영업권에 대한 현행 세법의 평가규정

전술한 바와 같이 영업권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초과이익개념, 잔여개념, 역동적 공개조직 가치개념 등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이 중 초과이익개념은 회계상 동일 또는 유사한 산업에 있어서 장래 기대되는 이익이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의 개념으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이 개념체계를 원용하여 내부창출 영업권을 평가하고 있다.

<표 6> 영업권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sup>8)</sup>×50%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10%)] ×3.7908(기간 5년, 이자율 10%의 정상연금 현재계수)

구체적으로 내부창출영업권과 관련하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 동안 미래에 발생할 초과이익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함을 통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9)</sup> 이 때 초과이익은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에 정기예금이자율(원칙적으로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또한, 현재가치 환산기간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지속연수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상속세법상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리하여 표시하면 <표 6>과 같다.

8)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에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 계산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9)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상증령 제59조 제2항).



## 2.2 내부창출영업권 평가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전 소절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내부창출영업권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동안 미래에 발생할 초과이익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미래 발생할 초과이익 금액은 과거 3년간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평균이익에 0.5의 배수를 곱한 금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규정은 내부창출영업권의 평가를 위해 초과이익접근법을 원용한 현행 상증세법에서 초과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 가중평균액의 50%를 미래 기대이익으로 간주하며 정상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정상이익률로 10%라는 확일적 이익률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정상이익률은 기업의 최저 필수수익률로 초과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할인율로도 이용되는데 이 때 정상이익률을 10%로 확일화하고 있어 현재가치 환산을 위한 할인율 또한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초과이익접근법에서의 초과이익은 한 기업이 획득하는 이익이 동종 산업에 속한 정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의

미하며 이에 기초할 경우 정상이익의 계산을 위한 정상이익률은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 상증세법 상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서는 해당기업이 속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10%라는 확일적 정상이익률을 모든 기업에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초과이익개념에 따라 산출되는 초과이익 즉, “유사한 산업에서의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의 의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초과이익의 산출에서 해당기업이 귀속되어 있는 산업효과를 무시함에 따라 현행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영업권이 가액은 산업별 특성에 따라 편의(bias)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다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6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을 5개년씩 구분하여 각 구간별로 산업평균이익률(ROE)을 측정하여 <표 7>을 통해 제시하였다. 표에 의하면, 1986~1990년의 경우 24개 산업의 정상이익률 분포가 최소 6.6%부터 최대 19.3%로 관찰되어 산업별로 이익률의 차이가 크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1991~1995년의 기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에서 고려하고 있는 정상이익률 10%를 상회하는 산업은 의료기기업과 의복업 단 2산업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5년의 기간별로 관찰한 나머지 구간들에서도 대동소이하다. 이처럼 산업평균이익률이 상증세법 상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적용되고 있는 정상이익률 10%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또한

산업별로 평균이익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영업권 평가를 위해 모든 사업에 10%의 정상이익률을 확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이 영업권의 평가가액을 왜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7> 산업별 평균이익률(ROE) 추세현황

구 분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1차 금속 제조업	13.3	8.6	4.1	8.7	6.3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11.2	6.5	9.1	6.3	9.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9.7	9.4	8.4	10.8	1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2	5.7	9.8	7.9	8.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4.8	8.6	10.7	9.8	8.6
도매 및 상품중개업	10.9	4.1	3.6	3.4	6.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5	7.1	3.3	7.7	3.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5	1.8	7.5	4.4	2.1
소매업; 자동차 제외	8.9	5.9	6.3	8.3	9.4
식품 제조업	9.8	6.5	7.9	7.1	6.2
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16.1	12.7	9.6	5.3	5.5
의약품업	10.3	7.7	10.6	10.1	9.9
의복업	19.3	12.7	8.2	7.9	8.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1.5	8.2	7.3	10.3	8.3
전기장비 제조업	12.9	5.3	7.3	10.5	8.3
서비스업	11.9	7.4	9.5	10.2	9.6
전자부품업	15.5	7.2	12.5	10.5	10.5
정보서비스업	16.1	9.9	18.4	7.3	13.9
종합 건설업	8.1	7.9	5.1	8.7	6.5
출판업	9.5	5.9	16.0	14.9	7.7
컴퓨터 시스템업	6.6	-1.6	9.5	6.8	7.3
통신업	12.2	7.2	8.1	5.9	5.2
화학업	13.5	7.9	8.2	6.6	8.7
펄프, 종이제조업	11.8	5.6	5.3	4.8	5.4

## V. 결론 및 제언

최근 경영환경이 정보화·지식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인간의 지적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통해 창출되는 무형의 재산권 즉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무체재산권 가치의 합리적 평가를 위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무체재산권으로 이를 거래대상 재산권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제공 거래에서 수반되는 평가절차에 비해 보다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통한 거래가액 산정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행 법인세와 상속세법에 제시되고 있는 매수영업권과 내부창출영업권의 평가방법이 다소 모호하여 영업권의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있어 이를 개별적 혹은 포괄적 물건으로 거래할 경우 조세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세법상에 존재하는 영업권 평가규정을 매수영업권과 내부창출영업권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한 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매수영업권을 사업결합일 현재 피취득자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순자산의 매입가액(시가)을 초과한 지급대가 전액으

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규정은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사업결합일 현재 기인식되어 있지 않던 자산 혹은 부채가 사업결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식별되는 경우에서도 이를 모두 매수영업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서 매수영업권의 과대평가를 초래하고 영업권 외의 식별가능한 무체재산권을 과소평가할 문제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매수영업권을 평가할 때 매수영업권의 매입가액에 일부 식별가능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이 포함됨에 따라 상속 및 증여시 매수영업권의 평가가액이 왜곡되어 올바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매수영업권의 매입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양수도일 혹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았으나 사업결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매수영업권과 분리하여 기타의 무체재산권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수영업권과 기타 무체재산권의 취득가액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와 유사하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 별도로 평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2항의 규정은 영업권과 무체재산권을 구분해야하는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동 규정의 삭제 및 수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내부창출영업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초과이익 개념에 따라 미래 기대이익에서 정상이익을 차감한 초과이익을 영업권의 지속연수를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미래기대이익은 과거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의 50%의 값으로 평가하고 정상이익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의 값을 적용하며 지속연수는 5년을 이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규정이 모든 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영업권 평가가액이 해당기업이 속한 산업효과(industry effect)에 따라 편의를 지닐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초과이익이 해당기업이 속한 산업의 형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는 이러한 산업효과를 무시한 채 단지 초과이익 계산에서의 정상이익률로 10%의 값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내부창출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상이익률에 관한 현행 규정을 기존 일률적 10%에서 해당 동종 산업의 평균이익률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세법상 영업권의 평가와 관련한 조문들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규정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가액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의 정비가 수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향후 영업권을 비롯한 무체재산권과 관련한 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정책당국은 현행 세법상 영업권평가와 관련한 규정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조세분쟁을 억제하고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구하되 세법변경에 따른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현동(2011),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세무학연구, 제28권, 제3호, pp.71-105.
2. 박정우, 손상욱(200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정립에 관한연구: 결산확정주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제2권, 제1호, pp. 53-91.
3. 이우택(2003), “영업권회계의 주요 쟁점과 해결과제에 관한 연구: : 최근의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0권, 제1호, pp. 157-191.
4. 細川健(2007) “營業權(のれん)再考—のれんと營業權の定義を中心に—, 稅法學 第557号,” 清文社.
5. Philip, F., 1997,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and Intangible Assets,” NY : Warren Gorham & Lamont.

## Abstract

###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Evaluation System for Goodwill under the Current Tax Law

Kwak, Young-Min\*

This Study investigates evaluation policies for goodwill under the current tax law and suggests improvements as follows. First, even though not appear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acquiree at the date of acquisition,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regulates that firms need to estimate purchased goodwill including acquisition amount and additionally recognizable intangible property right with no distinction. According to this rule, purchased goodwill from business combination under the current tax law has a drawback in overestimating. So, there is need of further improvement on the current related purchased goodwill regime to distinguish additionally recognized intangible property right from purchased goodwill. Second, in the consideration of internally generated goodwill, suggested in the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s a supplementary evaluation technique, the estimated value of goodwill may contain some bias, since the current regulation uniformly applies to all the companies with no industry characteristics. This may particularly become problematic while computing abnormal earnings, uniformly applying the 10% normal return to all the companies since the normal return is not likely to reflect industry characteristics and thus the computed abnormal earnings may be biased. Therefore, there is need to revise the current regulation relating to the normal return, to convert from the existing 10% rule to the industry average rate of return method

Key words: goodwill, tax law, corporate tax law,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purchased goodwill, internally generated goodwill

---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Management and Tourism, Dongguk University, ymkwak@dongguk.ac.kr